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75 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 박균택・박지원・주철현

김태선 · 김주영 · 이성윤

맹성규 · 한민수 · 전현희

김현정 • 박홍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,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,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따라 고의·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「근로기준법」이 개정되었음.

「근로기준법」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 지 않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「근로기준법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'명단이 공개된 체 불사업주'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(의안번호 제433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「근로기준법」
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출국의 금지) ① 법무부장	제4조(출국의 금지) ①
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	
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	
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
	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
	<u>주</u>
<u>6.</u> (생 략)	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